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0가합60882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피 고 1. A
2. 주식회사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 담당변호사 박수빈, 전세영
변 론 종 결 2022. 4. 15.
판 결 선 고 2022. 5. 13.

주 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와 피고 A 사이에 2020. 4. 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2020. 5. 18. 체결된 매매예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 A는 C에게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20. 5. 13. 접수 제2071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20. 5. 26. 접수 제229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지분 2분의 11)에 관하여, C와 피고 A 사이에 2020. 4. 2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A는 C에 게 대구지방법원 의성등기소 2020. 5. 13. 접수 제832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2020. 5.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B은 C에게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6. 2. 접수 제263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원고와의 사이에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원고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 C는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약정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는 2020. 4. 1. 동생인 피고 A와의 사이에 자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피고에게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20. 5. 13. 접수 제2071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는 2020. 4. 25. 피고 A와의 사이에 자신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피고에게 대구지방법원 의성등기소 2020. 5. 13. 접수 제832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C는 2020. 5. 18. 피고 A와의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한 다음 위 피고에게 대구지방법원 의성등기소 2020. 5. 26. 접수 제22933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C는 2020. 5. 28. 피고 주식회사 B(대표이사 E는 소외 회사를 C와 함께 운영하던 F의 처로서 소외 회사에 460,000,000원을 투자하였는바,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자신 소유의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피고에게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6. 2. 접수 제2634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소외 회사는 2020. 6. 18. 위 가.항 기재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연체한 후 2020. 6. 25. 파산을 신청하였고, 소외 은행은 2020. 6. 26. 원고에게 보증사고발생을 통지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2020. 10. 14. 소외 은행에게 위 대출금채무 265,585,104원을 변제하였다.

2.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의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7다28773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의 나.항 내지 마.항 기재 각 예약 내지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후 3개월 내에 1의 바.항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1의 사.항 기재 대위변제에 따라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였는바,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이 사건 약정 체결 시점은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시점보다 수년 전이고, ② 이 사건 사고 발생 시점에 가까운 2020. 5. 20. C가 소외 은행에 이자를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고도의 개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수년간에 걸쳐 매년 보증기간이 연장되고 보증범위가 일부 변경된 것 이외에 이 사건 약정은 최초 체결 이후 이 사건 사고 발생까지 기초적 법률관계가 동일하고, ② 2020. 5. 20. 이자 지급 이후 약 1개월 뒤에 파산신청이 이루어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C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

가. C의 채무초과상태

갑10호증의 1 내지 3, 갑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이 법원의 G기관, H조합, I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J에 대한 시가감정축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20. 5. 1. 당시 시가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518,160,000원, 별지2 목록 제1항기재 부동산 중 지분 2분의 1 8,224,800원,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지분 2분의 1 52,396,500원,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 309,000,000원인 사실, 그 무렵 C의 채무는 약 23억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6호증, 을7호증, 을8호증, 을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피고들은 ① 맹지임을 전제로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위 축탁결과는 믿을 수 없고, ② 시가감정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부동산의 시가가 약 30억 원까지 상승하여 적극재산의 가액이 소극재산을 초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축탁결과에는 별다른 위법이 없고, ② 피고들 제출의 증거는 위 부동산 인근의 시가에 관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C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C의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매각하거나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883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가.항 기재 인정사실에 C와 피고 A의 관계 및 피고 회사의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 매수경위(1의 마.항 기재 투자금 회수를 위한 것이다.)를 보태어 보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C가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별지1 내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처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처분행위로 자금을 융통하여 소외 회사를 계속 운영하는 것이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처분행위가 소외 회사의 운영자금을 융통하기 위함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들의 선의 항변

앞서 본 바와 같은 C와 피고 A의 관계 및 피고 회사의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 매수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이 원고들 비롯한 C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각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모두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각 C에게 1의 나.항 내지 마.항 기재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송승우, 판사 김진호, 판사 이지현

별지